

##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(안)

#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1년 3월 28일

○ 회부일자 : 2001년 3월 29일

3. 제안이유

석유판매업(일반·용제대리점) 등록신청 시 종전에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수수료 징수를 하였으나 석유사업법 개정(2000. 7. 29 산업자원부령 제107호)으로 시·도지사 권한사항으로 이양됨에 따라

수수료 관련사항을 조례로서 정하여 석유판매업(일반·용제대리점) 등록 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○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 신설

- 일반·용제대리점 등록신청 : 1건당 30,000원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본 조례안은 석유사업법이 개정(2000. 7. 29)됨에 따라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제외한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가 시·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수수료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

주요내용으로는 석유판매업 중 일반·용제대리점 등록 신청 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는 1건당 30,000원으로 하는 것임.

⇒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**붙임 :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(안)**